

|   |      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의 장 |
| 람 |       |

제 143호

2026년 8월 3일 (월)

차레

공고

-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-159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예고 통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
-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728호 녹지 내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계고 공시송달 공고
-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740호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처분의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
-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-745호 지적공부 확정·시행 공고

고시

- 화성시 고시 제2026-686호 도로명주소 고시

|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 예고 통지서  
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

「수도법」 제68조, 「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」 제44조 및 「지방세법기본법」 제91조  
규정에 의거 압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가  
수취인 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 
(송달)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일

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

- 1. 공 고 명 :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(통보서) 반송에  
따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8. 3. ~ 2026. 8. 17. (14일간)
- 3. 공고대상

| 성 명 | 상수도 사용지                      | 우편 송달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납금액(원)   | 반송사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김*욱 |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<br>서신면 상안리 7**-3 | 서울특별시 송파구<br>백제*분로**길 **-7,B동<br>2**호     | 386,500   | 폐문부재 |
| 조*재 |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<br>마도면 청원리 9**-* | 경기 화성시 만세구<br>송산면 송산**로8**번길<br>1*        | 1,947,730 | 이사불명 |
| 김*복 |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<br>양감면 송산리 5**   | 경기 화성시 효행구<br>봉담읍 동화**길 3*,<br>2**동 **02호 | 218,930   | 폐문부재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박*지 | 경기도 만세구 남양읍<br>남양리 20**-* | 경기도 시흥시 **도5길<br>*8-* | 1,232,580 | 주소불명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
#### 4. 공고내용

가. 기한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「수도법」 제68조(요금 등의 강제징수), 「하수도법」 제73조(강제징수 등), 「화성시 수도급수조례」 제44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(압류) 규정에 의거, **귀하의 재산(부동산, 차량, 예금 등)압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**

나. 위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(의견제출)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5. 문의사항 : 맑은물운영과 요금팀 (☎ 031-5189-3274). 끝.

# 녹지 내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계고 공시송달 공고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녹지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고하고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3.

## 화성시 만세구청장

- 1. 제목: 녹지 내 불법경작지 원상회복 계고
- 2. 공고기간: 2026. 8. 3. ~ 2026. 8. 31. (28일간)
- 3. 근거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, 제38조(녹지의 점용허가), 제25조(원상회복)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- 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- 5. 원상회복(자진철거) 내역(붙임: 불법경작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)
  - 기간: 2026. 8. 31.까지(28일간)
  - 대상

| 위 치      | 대상 또는 종류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|
| 하길리 1481 | 불법경작지 전량 | -   |

- 녹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적치물에 대하여 **2026. 8. 31.(월)까지** 원상회복(자진철거)하지 않을 경우,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불법 경작지 설치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6. 문의사항: 화성시 만세구청 환경관리과 (031-5189-1355)

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- 728호

## 원상회복 명령 게고서

성 명 : 불명[녹지 내 불법경작 행위자]

주 소 : 미상

녹지 내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**2026년 8월 31일까지 원상회복(자진철거)** 할 것을 안내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| 위치       | 대상 또는 종류 | 수량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
| 하길리 1481 | 불법경작지    | 전량 | -  |

2026. 8. 3.

화성시 만세구청장



## ◎ 위치도 및 현장사진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위 치</p>  | <p>하길리 1481</p>  |
| <p>조치사항</p> | <p>불법경작지 원상복구(자진철거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현장사진</p> |                 |

##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처분의 사전통보 공시송달 공고

화성시 만세구 관내 (소)하천구역 내에서 「하천법」 제33조 및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(소)하천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,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 년 8 월 3 일

###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

1. 공 고 명 :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처분의 사전통보 공시송달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8. 3. ~ 2026. 8. 18.(15일간)
3. 공고방법 : 화성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4. 법적근거
  -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,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 및 제95조(벌칙)
 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(소하천등의 점용 등), 제17조(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 및 제27조(벌칙)
  -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및 제21조(처분의 사전 통지)
5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: 붙임 참조
6. 기타사항
  - 가. 위 처분(원상회복 명령)에 대하여 이의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화성시 만세구청 안전건설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, 당초 예정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다. 아울러,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부과, 사법기관 고발 조치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른 강제 철거(행정대집행)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각

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본 통지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

마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담당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서 및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만세구(우정읍, 장안면, 양감면, 향남읍, 필탄면) | 만세구 안전건설과<br>(031-5189-1068) |



## [붙임1]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목록

| 연<br>번 | 위치(지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천명   | 행위자 | 위반<br>사항  | 위반<br>면적 | 처분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1      | 향남읍 구문천리 65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곡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700     | 원상회복 |
| 2      | 향남읍 상신리 491-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곡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288      | 원상회복 |
| 3      | 향남읍 상신리 834-1(860-1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곡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570      | 원상회복 |
| 4      | 향남읍 상신리 963(946-4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곡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300     | 원상회복 |
| 5      | 향남읍 구문천리 730-4(730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곡천   | 미상  | 가설건축물     | 49       | 원상회복 |
| 6      | 향남읍 도이리 389-1, 388-4, 388-5, 388-15,<br>388-16 | 난머리천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925      | 원상회복 |
| 7      | 우정읍 이화리 142(245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덕목2천  | 미상  | 정자        | 14       | 원상회복 |
| 8      | 우정읍 이화리 1192-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덕목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521      | 원상회복 |
| 9      | 장안면 석포리 795(759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둘서지천  | 미상  | 컨테이너      | 20       | 원상회복 |
| 10     | 향남읍 동오리 573(106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오1천  | 미상  | 컨테이너, 경작  | 249      | 원상회복 |
| 11     | 팔탄면 구장리 1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식재        | 1917     | 원상회복 |
| 12     | 팔탄면 지월리 479-2, 789-13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2114     | 원상회복 |
| 13     | 팔탄면 지월리 415, 414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558      | 원상회복 |
| 14     | 향남읍 발안리 144-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48      | 원상회복 |
| 15     | 향남읍 발안리 144-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400      | 원상회복 |
| 16     | 팔탄면 매곡리 121-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컨테이너, 경작  | 360      | 원상회복 |
| 17     | 팔탄면 지월리 741(752-3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96       | 원상회복 |
| 18     | 팔탄면 지월리 741(장집리 355앞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340      | 원상회복 |
| 19     | 팔탄면 지월리 7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270      | 원상회복 |
| 20     | 팔탄면 구장리 1021-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30       | 원상회복 |
| 21     | 팔탄면 구장리 1021-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380      | 원상회복 |
| 22     | 팔탄면 구장리 1021-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가설건축물, 적치 | 500      | 원상회복 |
| 23     | 향남읍 장집리 401-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컨테이너      | 12       | 원상회복 |
| 24     | 향남읍 평리 90-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발안천  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00      | 원상회복 |
| 25     | 장안면 수촌리 1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촌2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4929     | 원상회복 |
| 26     |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촌2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3196     | 원상회복 |
| 27     |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1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촌2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818      | 원상회복 |

| 연<br>번 | 위치(지번)                  | 하천명  | 행위자 | 위반<br>사항  | 위반<br>면적 | 처분내용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28     | 우정읍 화산리 1105-33         | 어은천  | 미상  | 가설건축물, 경작 | 1450     | 원상회복 |
| 29     | 우정읍 화산리 1061-6          | 어은천  | 미상  | 가설건축물     | 314      | 원상회복 |
| 30     | 우정읍 화산리 152-1           | 어은천  | 미상  | 컨테이너      | 70       | 원상회복 |
| 31     | 우정읍 화산리 183-7           | 어은천  | 미상  | 컨테이너      | 26       | 원상회복 |
| 32     | 팔탄면 창곡리 136-1           | 요곡천  | 미상  | 컨테이너      | 44       | 원상회복 |
| 33     | 팔탄면 가재리 539-3           | 하가등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793      | 원상회복 |
| 34     | 팔탄면 가재리 658-18          | 하가등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200      | 원상회복 |
| 35     | 향남읍 장집리 260-1           | 하가등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13      | 원상회복 |
| 36     | 향남읍 방축리 148-10(148-24앞) | 행정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91       | 원상회복 |
| 37     | 향남읍 방축리 148-10(148-28앞) | 행정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61      | 원상회복 |
| 38     | 향남읍 방축리 148-10(148-27앞) | 행정리천 | 미상  | 경작        | 121      | 원상회복 |

※ 위반면적은 화성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근거한 산측면적으로 실제 위반면적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.

##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 - 745호

### 지적공부 확정 · 시행 공고

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수촌리 14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· 시행함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3일

##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

1. 사 업 명 : 장안면 수촌리 공장부지 조성
2. 사업시행자 : 영성산업(주)
3. 공 고 기 간 : 2026. 8. 3. ~ 2026. 8. 23. (20일간)
4.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(폐쇄 및 확정조서 별첨)

| 토지소재              | 종전 지적공부<br>(폐 쇄) |         | 확정 지적공부<br>(확 정) |         | 지 적 공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지번수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| 지번수              | 면적(㎡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만세구<br>장안면<br>수촌리 | 3                | 1,397.0 | 1                | 1,431.0 | [폐쇄]<br>○토지대장 : 3매<br><br>[확정]<br>○토지대장 : 1매<br>○경계점좌표등록부 : 1매 |

5. 지적공부 확정 시행일 : 2026. 8. 3.
  6. 열 람 장 소 : 화성시 만세구청 민원토지과 지적팀
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만세구 민원토지과 지적팀(☎031-5189-109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및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

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수촌리 공장부지 조성[영성산업㈜]

| 연번 | 토지소재    | 종전토지  |    |         | 토지소재    | 확정토지 |      |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   |         | 지번    | 지목 | 면적(㎡)   |         | 지번   | 지목   | 면적(㎡)   |    |
| 소계 |         | 3     |    | 1,397.0 |         | 1    |      | 1,431.0 |    |
| 1  | 장안면 수촌리 | 13-16 | 임야 | 828.0   | 장안면 수촌리 | 1482 | 공장용지 | 1,431.0 |    |
| 2  | 장안면 수촌리 | 14    | 답  | 509.0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
| 3  | 장안면 수촌리 | 14-3  | 답  | 60.0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

##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, 변경,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8. 3.

화 성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장외리 78-6, 산22-30 외 28건

| 토지소재지(지번) | 도로명주소 | 효력발생일 | 도로명 고시일 | 부여사유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
| 별 도 열 람   |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|

○ 도로명주소 변경 :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능동 444-3 외 1건

| 토지소재지(지번) | 도로명주소(변경전) | 도로명주소(변경후) | 효력발생일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별 도 열 람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
○ 도로명주소 폐지 :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지화리 380-2 외 3건

| 토지소재지(지번) | 도로명주소 | 폐지일 | 폐지사유 |
|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별 도 열 람   |       |     |    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(☎5189-1646)에 문의.

또는 주소정보누리집(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, <https://www.iuso.go.kr>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, 동·층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